

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7나519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7나51997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 선고 2017가단259 판결

전문

원고,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

담당변호사 류재울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혜인

변론 종결 2018. 9. 5

판결 선고 2018. 11. 14

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. 선고 2017가단259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 대 4, 932㎡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. 3. 20. 접수 제 3107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환판사 김보현판사 유재영